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’21.1.12. 공포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(’21.00.00. 시행)
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
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처리 권한 부여(안 제1조의2, 제2조~제4조, 제4조의2, 제5조, 제7조의2~제7조의7, 제7조의11, 제11조, 제12조)
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복무처리 권한 부여
- 나. 비상근무 발령시 적용되는 ‘소속 공무원’의 범위 명확화(안 제2조의3, 제2조의4)
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 포함)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(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포함)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2제2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과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의회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4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은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의3 제1항 중 “소속 공무원”을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의4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“소속 공무원”을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”으로 하고, 후단 중 “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”을 “소재지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제3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3항제5호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3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하고, 제2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후단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하며, 제2항제1호 후단 및 제2호 전단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6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7제2항, 제3항 본문 및 단서, 제5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

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13항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” 제7조의11 전단 및 후단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의2(근무기강의 확립) ① (생략)	제1조의2(근무기강의 확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	② 지방자치단체의 장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과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의회의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

제2조(근무시간 등) ① (생략)	제2조(근무시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. ----,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----- ----- ----- -----

현	행	개	정	안
영할 수 있다.				
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<u>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이 정한다.		③		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
④ 「전자정부법」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		④		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</u>
제2조의3(비상근무의 발령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<u>소속 공무원</u> 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비상근무의 종류, 발령일시,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별시		제2조의3(비상근무의 발령) ①		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</u>

현행	개정안
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생략)
제2조의4(비상근무 요령) ① (생략)	제2조의4(비상근무 요령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,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.</u>	② ----- <u>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공무원</u> ---, <u>소재지를</u> ----- ---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<u>소속 공무원</u> 을 토요일 및 공휴일(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또는 「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, <u>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.</u>	1. ----- -----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</u>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2.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, <u>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.</u>	2. ----- -----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</u> ----- -----.
3.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, <u>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.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,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</u> ----- --.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근무시간 등의 변경) ①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직무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.	제3조(근무시간 등의 변경) ①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 -----.
② 공무원은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·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(이하 “유연근무”라 한다)를 신청할 수 있다.	②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 -----.
③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제2항	③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</u>

현행	개정안
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,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·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	<u>회의 의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	제4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	②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.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③ ----- 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의2(출장공무원) ① ~ ② (생략)	제4조의2(출장공무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, ----- -----.
④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	④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.
제5조(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)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.	제5조(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)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7조의2(연가 일수의 공제) ① ~ ② (생략)	제7조의2(연가 일수의 공제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편·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(소속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	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3(연가 당겨쓰기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(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)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	제7조의3(연가 당겨쓰기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
제7조의4(연가 사용의 권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.	제7조의4(연가 사용의 권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

현행	개정안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	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
1.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,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	1.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
2.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	2.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

현행	개정안
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	
제7조의5(병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,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	제7조의5(병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-----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	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---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6(공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	제7조의6(공가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-----

현행	개정안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.	
1. ~ 12.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(생략)	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	②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
③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	③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 -----,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

현행	개정안
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	⑤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⑥ ~ ⑫ (생략)	⑥ ~ ⑫ (현행과 같음)
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[배우자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]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(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	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)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또는 <u>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 -----.
제7조의11(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)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. 이 경우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,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	제7조의11(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)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1조(겸직 허가)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	제11조(겸직 허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는 경우에는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(생략) 제12조(면직된 공무원의 근무)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.	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또는 <u>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2조(면직된 공무원의 근무)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 ----- -----.